

'92 EC 전자산업의 무역환경

본고는 향후 EC의 대외 무역환경에 영향을 갖는 요소 중 특히 EC역의 기업들과 관련한 역내 조립생산과 수입제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EC의 대외 경제정책, 산업정책 그리고 경쟁정책 등을 다룬 것이다. 또한 본고는 EC단일시장 완성이 域内外의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기회균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란 가정하에 서술하였으며 브뤼셀의 통상전문 법률 회사인 M.D社의 보고서임을 밝힌다.

1. 대외 경제정책

가) 반덤핑법

EC의 반덤핑 규정이나 정책시행 등은 GATT 반덤핑코드 개정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강경하며 공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특이한 것은 반덤핑법이 EC자체의 發議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산업의 제소에 의해서 개시되는 무역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부문 같은 특정산업에서 덤핑을 제소할 때 EC집행위는 적극적으로 이를 조사하여 EC산업에 우호적인 판정을 내릴 것이란 분위기를 만들어 왔음이 틀림없다.

반덤핑 케이스를 다루는 EC집행위의 방법들이 여러면에서 수출자나 제3국들에 의해 비난

받아 왔으며 또한 EC사법재판소에 제소당해 왔으나 GATT 분쟁해결 패널의 “덤핑우회방지 규정”에 대한 例外的인 판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주요 事案들에서 집행위의 판정이 지지를 받아온 것에 비추어볼 때 집행위의 반덤핑 조사방법의 완화는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반덤핑 규정을 보다 명료히 그리고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GATT 코드개정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정상가격 (Normal Value) 과 수출가격 그리고 피해의 결정 등의 계산방식을 보다 명료히 개정토록 제외하고 있는데 설령 이것이 합의되어 해당코드가 개정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EC 규정이나 또는 집행위의 계산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991년 4월 GATT패널이 일정조건하의 EC역내 조립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역내 부품 사용 의무율을 명시한 Screwdriver 규정 : EC반덤핑 규정 2423/88 13조 10항)가 GATT법에 위배됨을 판정한 일·EC간 분쟁 이후 EC는 이 규정을 사용치 않아 왔으나, GATT 코드내에 우회방지 규정을 삽입할때까지는 현재의 규정을 계속 유보할 것이며 적절한 상황하에서는 이를 적용할 것임을 표명해 오고있다.

EC는 GATT 코드내에 우회방지 규정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수정안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나, 포함될 경우에는 조속히 자국법으로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타결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또는 라운

드 자체의 무산 가능성 등을 가정해 볼 때 EC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 GATT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을 무시하고 현행규정 유지
- ii) 미국의 우회방지 규정을 원용한 新우회방지 규정 채택
- iii) GATT 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협상案에 있는 우회방지구정 채택

우회방지구정이 현행 GATT라운드에서 동의되어 GATT법으로 입법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해 볼 때 이중 세번째 代案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규정들의 채택이 곧 EC로 하여금 여타의 다른 합의된 개정안(명료성 등에 관해)들을 받아 들이도록 압박하지 못할 것이다.

EC가 취할 최종 형태가 무엇이되든 EC는 반덤핑 관세 우회에 대한 규제조치를 현재의 애매한 상태에서 그리 오래두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앞으로 채택될 新우회방지구정의 형태에 따라 EC역내에서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역외 기업(특히 전자부문)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제3국이 EC로 생산공장을 계속 이전하는 경우 동종품의 직수입은 감소하고 해당부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전자부문에서의 새로운 반덤핑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반면 우회방지구정의 사용은 증가될 수 있는 것이다. 집행위는 적절한 환경하에서는 Anti-absorption 규정(반덤핑규정 2423/88 13조 11항) 같은 우회방지구정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이 규정은 GATT법에 위배 가능성이 있다)

역외 전자업체들에 의한 對EC 투자증가는 EC부품사용 규정이나 전반적인 투자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데, 집행위의 정책은 단일시장은 해외투자에 대해 어떠한 장벽이나 현지 부품사용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더라도 이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개별 회원국들은

같은 효과를 갖을 수 있는 개별국 차원의 정책을 적용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투자자가 해당 회원국으로부터 그 나라 부품을 구입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승인이나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해당국산 부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Safeguard Measures

EC조약 115조는 특정상품이 다른 회원국을 점유하여 들어오는 간접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별 회원국의 무역정책이 상품의 자유이동을 명시한 EC규정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1991년 회원국들은 제3국 수입품에 대해 2,000여건의 국가쿼타나 여러가지 쌍무 수출자율 규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전자부문과 관련된 것들이다.

개별 회원국과 제3국간의 국가쿼타나 쌍무협정은 EC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통상정책이나 공동시장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단일시장 완성과 역내 국경철폐 등은 이론상 이러한 국별조치와 115조를 無効하게 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1993년 이전에 이들 국가쿼타를 철회해야 한다고하나 과연 이들 일부 국가쿼타들이 EC차원의 쿼타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데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한 예로서 일본과 EC간의 자동차 수입협정을 들 수 있는데, 확실치는 않으나, 현재 규제중인 여러가지 개별국 규제를 곧 EC차원으로 대체할 것이다.

수차례 제외된 것으로, 역내 국경철폐 이후 115조는 중단되어야하며, EC수준의 조치가 합의되지 않는 이상 상품의 자유이동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그리고 개별국 통상정책 수단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되는것은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회담에서 합의된 EC조약의 개정안에 115조 개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서 115조의 효력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역내 국경철폐가 115조의 효력을 경감하고 또한 적용하기 더욱 어렵게 할지라도 마스트리히트 협정문이 절차를 계속 유지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EC는 모든 면에서 진정한 단일시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일부분에서는 집행위가 허용한 "Safeguard Measure" (115조)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집행위의 일반정책은 비록 115조가 남아있게 되더라도 적용빈도를 훨씬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 집행위는 이사회(council)에게 보내는 Communication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보호전략은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영구히 강화하기 위한 방어적인 보호전략은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영구히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집행위는 역시 수입(Regulation 288/82)에 대한 일반 규정을 갖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수입 동향을 조사하고 EC차원의 쿼타를 부과하며 또한 수입감시조치(Surveillance Measures)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수입에 관한 일반 규정은 비교적 자주 사용되지 않아 왔으나 만약 115조가 효력을 잃게되거나 회원국들이 특정 상품이나 수출국에 대해 개별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될 경우 보다 더 이 규정을 선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관세

EC는 GATT내에서 관세에 대해 상당한 의무(지위)를 갖고 있으며, 관세를 인상하려면 다른 부문의 관세를 동일한 만큼 인하 하여 이를 승인받을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EC가 전자부문 대외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관세 조치를 선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행 우루과이라운드가 성공리에 타결된다면 EC의 관세수준은 전반적으로 약 30%정도 인하될 것이다.

EC는 또 EC의 핵심 전자부품생산이 부족하거나 해당산업이 없을 경우 관세유예조치를 지

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EC가 한국을 GSP공여 대상국에서 제외했던 것은 GSP역시 EC의 대외경제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92 재개기된 對한국 GSP공여에 대해 유럽의회의 대외관계 위원회는 1992년 이후 한국을 더이상 개도국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여대상국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만약 유럽이사회가 이러한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 대외경제정책

1990년 11월 집행위는 이사회에 제출한 "개방환경하의 산업정책" (Industrial Policy in an Open & Competitive Environment)에서 EC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의 엄중한 적용하에 개방적이며 분명한 무역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 중에는 특히 EC가 향후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반덤핑법의 강경·명확한 적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집행위는, 공공기관이 보호주의의 색채를 띤 방어적 산업정책을 피하고 개방화 정책을 유지하되 동시에 불공정 경쟁행위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EC정책의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EC도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균형이 올바르며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행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패여부가 이러한 교역환경을 결정짓는 주요변수로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산업정책

EC의 전자산업은 핵심산업으로서 EC노동력의 6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이 산업에 연관되어 있으며 전자제품 시장규모도 EC GDP의 5%(2,000년도에는 배로 증가예상)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EC산업은 건강한 편이 못되고 있

다. 일본기업들이 전세계 가전제품 생산의 55%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 EC기업들은 2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본기업들이 EC생산의 25%를 관장하고 있으며 1989년 이 부문에서의 무역적자가 9Billion ECU에 달했다. 전체 전자분야에서 EC무역 적자액은 1989년 31Billion ECU였으며 이중 15Billion ECU 상당이 컴퓨터와 관련된 적자였으며, 유럽 공급자들은 EC수요의 불과 40%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Siemens, Bull, Olivetti 등 3사의 총매출액이 IBM의 1/3정도 수준이다.

마이크로칩에서의 EC 무역적자는 5Billion ECU(1989) 이상으로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50%, 미국이 37%인데 비해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EC는 산업정책 방향의 상당부분을 전자분야에 역점을 둘 것임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산업정책의 관점은 EC 회원국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벨기에 같은 회원국들은 정부 개입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이제껏 표명되어온 EC정책은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한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이나 불가피하게도 이해를 달리하는 압력단체간의 조정의 합의를 나타내고 있다. EC집행위는 EC공공기관의 역할을 산업의 활력을 위해 명확하고도 예측가능하며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촉매제나 선도자로서 설명하고 있다. (단일시장 계획이 이러한 류의 산업정책의 예가 된다.) 그러나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산업자체에 있음을 지적한다.

1991년 12월 마스트리히트 회담에서는 EC조약에 산업에 관한 새로운 장을 추가 했는데 요지는 산업정책에 있어서 EC의 무간섭주의적 역할을 지향하는 것이며, EC와 회원국들은 EC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개방과 시장경쟁원칙에 따라 조성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포괄적인 EC정책에도 불구하고 개별 회원국들은 국수주의적 혹은 유럽지역주의적인 산업정책들을 계속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것

은 국영 민간전자와 핵연료 사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의 잉여규모의 칩생산업체들의 칩제조 부문들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프랑스의 최근의 움직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내의 산업정책협약의 마스트리히트 회담의 측면에서 볼때 더욱 두드러지고 긴급한 주제가 될 것 같으며, 전자부문에서는 무역정책과 그 환경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산업정책은 무역 및 경쟁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무역정책에 관하여 집행위는 보호주의 성격의 방어적 산업정책을 버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비록 EC는 반덤핑법을 위장된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강경히 부인하고 있으며, 집행위는 이에 대해 EC의 무역정책피반덤핑법은 분명하고도 엄중히 계속 적용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록 EC이사회가 1973년이후 EC산업정책에 관한 결론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아 왔으나 전자부문의 중요성은 1991년 11월 18일 전자 및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은 EC경제의 경쟁력을 위한 최고의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조치 같은 EC무역정책수단의 효율성이 공정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提高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비록 EC가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의 개념을 거부하고 있으나, 전자부문은 핵심산업으로서 정책의 범위내에서 EC는 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경제적·법적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EC의 의도는 EC 전자산업에 관한 집행위의 최근 협의결과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행위는 직접보조금이나 개입주의적 접근은 피했지만 다음과 같은 5가지 전자 산업육성 방안을 제시했었다.

- 수요촉진(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축, 유럽 통신망의 구축)
- 범 EC차원의 기술표준화 도입의 촉진
- 특정 부문에서의 연구조사 계획 기금 조성

—직업훈련 증진

—제3국 전자시장 접근 확보

분명한 것은 EC 전자산업이 JESSI(Semiconductors) 같은 연구계획을 위한 EC기금과 HDTV의 경우처럼 유럽표준 및 규격의 설정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것이다.

3.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무역의 산업정책 모두가 보호주의적이며 개입주의적인 여건을 상당히 제공하는 반면 경쟁정책은 오히려 자유시장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공공연히 이들 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예로서 EC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일본산 복사기의 반덤핑규제에 대한 비난과, 또한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Aerospatiale”와 “De Havilland社”간의 합병(합병시 유럽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음)을 금지한 경우 등이 있다.

EC의 경쟁정책인 EC시장 개방화와 역내 교역장벽 철폐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무역정책과 관련하여서는 EC기업과 역외 경쟁기업들과의 EC수입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협정(例;Franco-Japanese Ballbearing Agreement)을 불법화하고 있다.

EC경쟁정책의 옹호자들은 이 정책을 EC경제 경쟁력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책은 산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협정에서 합의되어 EC조약내에 새로이 추가된 산업 관련 후에서는, EC조약

내용에는 경쟁을 왜곡할 어떠한 조치도 EC가 취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경쟁정책은 또한 정부보조에 대한 조사와 규제에 대해 산업정책과 상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EC 경쟁담당집행위원은 전자부문에 대한 프랑스와 이태리 정부의 지원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며, 만약 정상적인 경쟁을 해칠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받는 보조금을 상환하도록 권한을 갖고 있다.

경쟁정책은 또한 독점(Public Monopolies)과 대규모 통합(Merger)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는 해당 통합의 경쟁법 준수여부를 검토할 때 산업정책과의 문제점들을 얼마만큼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4. 결 론

현재의 EC 대외경제정책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반덤핑 규정은 우회방지규정(Anti-Circumvention Provision)의 신설로 더욱 강화되어 계속 사용될 것이다. EC의 전자산업을 계속 핵심산업으로 간주되어 무역정책의 시행 목표가 될 것이며, 더욱이 직접개입이나 보조금의 격감으로 이를 대신할 특별한 지원 또는 부양책이 마련될 것이다.

경쟁정책은 보호주의적 무역정책과 개입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제어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나, 이들 정책들의 현행기준을 그리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